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96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서영교·조인철·황정아

박지혜 • 김준형 • 이수진

이해식 • 한정애 • 조계원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41조),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를 "하고, 이 경우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한다.

제4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료지원) <u>국가</u> 는 국가유	제41조(의료지원) <u>국가와 지방자</u>		
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u> 치단체</u>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			
을 <u>한다</u> .	<u>하고, 이 경</u>		
	우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		
	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u>한다</u> .		
제42조(진료) ① (생 략)	제42조(진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	②		
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경우 각 지역별로 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		
	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